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

2009. 12. 10



목 차

I. 추진 배경	1
II. 기본 방향	2
III. 고등학교 입학제도 개선 방안	3
1. 현황 및 문제점	3
2. 특목고, 자율(립)형 사립고 등 입학제도 개선	4
3. '고등학교 입시 사교육 영향평가제' 도입	6
4. 고등학교 입학전형 시기 개편	7
IV. 외국어고등학교 제도 개선	8
1. 외국어고 현황 및 정책 연혁	8
2. 외국어고의 문제점	9
3. 외국어고 제도 개선 방안	10
V.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	12
1.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	12
2. 교과 중점학교 운영 확대	14
VI. 고등학교 체제 개편(안)	15
VII. 향후 추진일정	16
【참고자료】	17

□ 다양한 선택이 보장되는 고등학교 교육 선진화 필요

- 입시위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글로벌 창의 인재 육성과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 필요
- 모든 고등학교에서 수월성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선발 경쟁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학교간 교육경쟁 유도
- 특정 소수학교에 우수 학생이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하여 고등학교 전체의 상향 평준화 유도

□ 고교 입학전형 개선을 통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

- 사교육 유발요인을 최소화하는 고교 입시제도의 지속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외고 등 특목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 수요 상존
- 불필요한 사교육 수요를 유발하는 학생선발방식 개선 등 외고 제도 개선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 증가
- 교과지식의 일회적 평가가 아니라 평소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중시하는 고교입시전형 개선으로 중학교 교육의 안정화 도모

□ 자율성과 다양성 제고를 위한 고등학교 체제 개편

- 우수한 학생들이 일반계고에서 수월성 학습 수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일반계고 교육력을 획기적으로 개선 필요
- 공교육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자율화·다양화의 큰 틀 안에서 고교체제 개편의 필요성 증대

□ 기본 원칙

- (기본방향과 원칙)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입학전형 제도 개선과 외고 등 고교체제 개편 동시 추진
 - (입학전형 개선) 사교육 수요유발을 최소화한 전형방식 개선,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확대 등 입학전형 개선 추진
 - (외고 제도 개선) 외고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교육과정 개정 및 지정기준, 절차 등에 대한 관리 강화
 - (고등학교 수월성 제고) 일반 고등학교에서 수월성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력 제고 방안 추진
 - (고등학교 체제 개편) 현행 복잡한 고교체제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특목고, 전문계고 등 고교체제 개편
 - 고교다양화 프로젝트에 의한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등과 교육력 경쟁을 통해 상향평준화 도모
- ※ 외고제도 개선, 고교 체제개편, 학교 교육력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양성 제고를 위한 고교 체제개편' 정책 연구(연구기간 : '09.10~'10.3) 추진

□ 추진 방안

- 고교 입학제도 개선은 '11학년도부터 적용
 - 입학제도 개선은 외고를 포함하여 고교 전반적 개선을 추진하고, '11학년도 입시부터 적용
- 고교 수월성 제고 방안은 최대한 빠른 시기에 전국 확산
- 고교체제 개편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

1. 현황 및 문제점

□ 특목고 등 입시에서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 유발

- 특목고, 자율(립)형 사립고, 국제중 등 영어듣기 평가,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 등으로 입학에 위한 사교육 수요 유발
 - 교과성적 우수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 편입시험제도 운영으로 우수학생 독점 및 설립취지에 위배된 운영
- 일부학교에서 실시하는 입학사정관제는 수상실적, 인증시험 점수 등을 반영하여 '스펙 쌓기' 유발 우려

□ 사교육 유발 요인에 대한 점검 기제 부족

- 평준화 지역은 입학전형권을 교육감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목고 등은 실질적인 입학전형권을 개별학교에서 행사
- 학생선발권을 지닌 학교의 입학전형에 대한 정교한 점검기제 미비로 사교육 유발 요인에 대한 사전 배제 곤란

□ 전기/후기학교의 경직적인 구분으로 학생선택권 제한

- 평준화 제도 도입('74) 이후 학교유형에 따라 일반계고는 후기, 특목고·전문계고 등은 전기라는 구분이 획일적으로 적용
 - 전·후기 가운데 1학교를 선택하도록 하는 획일적인 입시제도로 학생이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여 학교 선택하는데 한계
-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전문계고 모두 전기학교에 해당하여 학생은 이중 1학교를 선택하고 선발되지 않으면 일반계로 진학하는 불합리 발생
- 외고 등 특목고는 전기학교라는 이유로 우수학생을 선점함으로써 후기 일반계고와의 불공정한 경쟁 구조 심화

2. 특목고, 자율(립)형 사립고 등 입학제도 개선

□ 입학사정관에 의한 '자기주도 학습 전형' 도입

- (개념)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결과와 학습 잠재력을 기준으로 입학사정관이 학생을 평가하여 전형
- (전형 대상) 지원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하되, 정원의 20% 이상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선발하고 재정지원 방안 마련
 - ※ 공립고교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20% 선발을 '11학년도부터 적용하고, 사립고교는 단계적으로 적용 : 정원의 10%('11) → 15%('12) → 20%('13)
- (전형 요소) '학교생활기록부, 학습계획서, 학교장 추천서'를 전형 요소로 하여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평가
 -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경시대회 등 선행학습 유발요소 배제
 - ※ 외고는 학과성적 반영시 영어 성적(중학교 1학년 성적 제외)만 전형에 반영
- (전형 방법) 입학사정관으로 구성된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서류와 면접을 활용하여 심사
 - ※ 입학전형위원회 구성 : 교내 입학사정관 2명 이상, 교육청 위촉 입학사정관 1명 이상, 학과별 전공 입학사정관 1명 이상
 - 면접은 독서기록, 학습계획 등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중심으로 실시
- (추진 방안) 자기주도 학습 전형 내용 및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학교에 보급
 - 입학사정관 대상 특별 연수 및 상시 장학 실시
- (추진 계획) 외고, 국제고에 적용하고, 자립형 사립고, 비평준화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 학생을 선발하는 자율학교 등으로 확대

□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 배제

- 학교별 필기고사 및 변형된 형태의 필기고사 실시 금지
 - 특목고, 자율(립)형 사립고, 자율학교 등에서 학교별 필기고사를 금지하고,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 적성검사 등 폐지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개선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학교의 경시대회, 인증시험, 자격증 취득 등 선행학습 유발요소 배제
 - 학교생활기록부에 독서 항목을 신설하고 독서실적 등을 기록하여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 활용
-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교과부 훈령)’ 개정
- 특목고, 자사고, 국제중, 자율학교 등 전·편입제도 개선
 - 실질적 필기고사로 실시되고 있는 특목고, 자사고, 국제중, 자율학교 등의 전·편입학에 입학전형 방식 준용

□ 국제중, 자율 중학교 입학전형 개선 추진

- 국제중, 자율중학교도 독서 경험 등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장 추천서를 전형요소로 하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으로 전환
- 지필고사 및 영어 등 인증시험, 경시대회 등 초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넘는 입학전형 배제

3. '고등학교 입시 사교육 영향평가제' 도입

□ '고등학교 입시 사교육 영향평가제'의 개념 및 대상

- (개념) 학생선발권을 가진 고등학교가 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 학생선발이 사교육비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강구
- (대상)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립)형 사립고, 학교별 전형을 실시하는 자율학교 등에 우선 적용

□ 추진 절차 및 방법

- 매년 입학전형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실시

【고등학교 입시 사교육 영향평가 절차】

1	사교육 영향평가서 작성	개별학교에서 신입생 사교육 경험, 주변여건, 학생·학부모 의견 등을 조사하고, 담당자 의견 등을 포함하여 대책 및 계획 작성
↓		
2	학교 자체 평가	학교별 대책 및 계획에 대해 교직원 회의, 지역사회 학생·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		
3	시·도교육청 평가	학교에서 시·도교육청에 평가서 제출 제출된 평가서에 대해 시·도 교육청 고등학교 입시 사교육 영향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고등학교 입시 사교육 영향평가위원회 : 시·도별 정책 수요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추진 일정 및 방안

- '10학년도 고교 입학전형의 사교육 영향을 평가하여 '11학년도 입학전형부터 반영
- 교육청 입학전형기본계획 수립시 사교육 영향평가 계획을 포함, 학교는 사교육 영향평가 결과를 기초로 입학전형시행계획 수립

4. 고등학교 입학전형 시기 개편

□ 고입 전형 일정 및 시기 조정

- (현행) 고입 전형 일정이 시·도별로 한달 이상 차이가 있어서 학생 입장에서 혼란스럽고 학생들의 실질적 선택권 제한
- (개선) 시·도별 고입 전·후기 전형일정을 같은 시기로 조정하고 '11학년도 입시부터 적용, 전국적으로 시행

□ 전·후기 학교구분 재편 (중장기 검토사항)

- (현행) 학교 유형별로 전문계고·특목고 등은 전기, 일반계고는 후기로 구분하고, 학생은 전·후기 각각 1개교씩 선택하도록 규정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전문계고 모두 전기에 해당하여 1개교를 선택하고 선발되지 않으면 일반계로 진학해야 하는 불합리 발생
- (개선) 전·후기 학교 구분을 가·나·다 학교군으로 재편하여, 학생들의 학교 선택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
 - 학생은 각 학교군에 속해있는 학교 중에서 순차적 또는 병렬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최대 3개교까지 선택 가능

【학교군 운영 예시】

구분	가군	나군	다군
학교	A고(특목고) B고(자율형 사립고) C고(마이스터고)	D고(자율형 공립고) E고(일반계고) F고(특성화고)	G고(자율형 공립고) H고(일반계고) I고(특성화·전문계고)

- (실행 방안) 전문계고, 예술·체육고는 우선 추진하고, 일반계고는 비평준화 지역, 도지역부터 신청을 받아 추진

1. 외국어고 현황 및 정책 연혁

□ 외교 현황

- 외교는 전국 30개교, 25,734명 재학 ('09. 10. 현재)
 - 학교수 : 30개교 (공립-12, 사립-18), 평준화지역 학교수 : 20개교
 - 일반계고교 학생수 대비 1.7% (일반계 학생수<'09> : 1,484,966명)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외고 수	6	3	1	1	1	9	2	1	1	1	1	2	1	30
학생 수	6,772	2,807	527	1,056	997	9,238	1,370	353	331	376	447	1,172	288	25,734

※ 3개교 추가 개교 예정('10) : 울산외고, 강원외고, 미추홀외고(인천)

□ 외교 등 특목고 정책 연혁

- 특목고 제도 도입 및 개교('74, 舊 교육법시행령 제112조)
 - ※ 인문계 3교(삼육, 성심, 중경), 국악고, 서울예고, 서울체고, 철도고, 부산해양고
- 대원/대일외국어학교는 각종학교로 개교('84)
- 외국어, 예술, 체육고('92), 국제고('98)를 특목고에 포함
- 특목고 지정·고시권, 시·도교육감에게 이양('01.3)
 - ⇒ 외교 등 특목고 설립 확대 : 18개('01) → 30개('09)
- 사교육 경감대책 일환, 「특수목적고 운영 정상화 방안」 발표('04.10)
- 사전협의제 도입위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공포 ('07.5.16)
- 수월성 제고를 위한 고등학교 운영 개선 및 체제 개편 방안 발표('07.10) 및 외교 등 특목고 입시방법 개선안 발표('07.12)
 - 중 3-2학기 성적 반영, 지필고사 형태의 입학전형 요소 제외 등
- '사교육경감 종합대책'에 외교 대책 포함('09.6.3)
 - 지필고사 금지, 중학교 수준 출제 등 입시 개선

2. 외국어고의 문제점

□ 외고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진학·진로 문제

- (설립목적 문제) 현행 외고 설립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어학영재’는 개념이 모호하여 어학영재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 유발
 - 이공계·의학계 진학률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나, 동일계(어문계열) 진학은 아직 저조

※ 외고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된다는 의견은 9.3%(여의도연구소, '09.10)

※ 졸업생 중 26.7%('05~'09 평균)만이 동일계(어문계) 진학

구분	어문계	인문사회계	이공계	의학계	기타계	계
2005	27.5%	45.7%	14.7%	4.3%	7.7%	100%
2006	25.0%	43.6%	17.6%	5.1%	8.7%	100%
2007	25.8%	41.6%	18.1%	4.9%	9.6%	100%
2008	30.4%	52.3%	9.8%	1.5%	5.2%	100%
2009	25.0%	60.1%	9.2%	0.9%	4.8%	100%

-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외고 졸업생의 사법시험 합격률 증가가 외고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
 - ※ 고교별 법조인 배출 상위 10교 현황 (한국인법조인대관, '09)
 - 최근 5년 : 대원외고(205), 한영외고(99), 검정고시(90), 명덕외고(72), 대일외고(61), 안양고(58), 이화외고(48), 순천고(45), 경기고(43), 서울고(37)

□ 불필요한 사교육 수요 유발과 높은 학비 부담

- (사교육 유발) 일부 외고에서 수리형 문제 출제, 구술·면접고사에 변형된 지필평가 등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과잉 사교육 유발
 - 특목고 진학을 위해 초·중학생부터 과도한 사교육 문제가 심각
- ※ 외고의 잘못된 운영이 사교육 증가의 한 원인이라는 것에 공감하는 의견이 70.6% (여의도연구소, '09.10)

- (학비 부담) 사립 외국어고의 높은 학비 부담으로 취약 계층학생 입학 곤란

※ 사립외고 1인당 평균 연간 부담학비('09) : 6백8십만원(수익자부담 경비 포함)

3. 외국어고 제도 개선 방안

□ 외고의 특목고 존속, 타 유형 학교 전환 등 선택 추진

- 설립목적을 재정립하여 이에 부합하는 외국어 중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학급규모 등 여건을 충족한 경우 외고로 존속
- 외고 존속 외에 타 유형 학교로의 전환을 원하는 외고는 고교 체제 개편에 맞추어 전환
 - '12까지 국제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등으로 선택·전환
- 외고·국제고 지정기준, 절차, 교육과정 등을 법제화하고 5년 단위로 학교별 운영을 평가하여 재지정
 - '특목고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정

□ 외고 설립목적 재정립 및 교육과정 개선

-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이란 측면에서,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으로 외고 교육목적을 명료화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6호 개정 : '어학영재 양성' →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
 - 해당 언어 사용국 학생의 입학을 정원의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교육경비 지원 방안 마련
-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지도·관리 강화
 - 현행 3개 외국어 이수가 의무화된 전문교과 구성을 2개 외국어 이하로 단순화하여 전공 외국어 교육에 집중
 - ※ (현행) 82단위 이상 외국어 교과 편성 : '전공외국어(50% 이상)+제1선택 외국어+제2선택외국어' 등 3개 외국어 이수

- 현행 42단위(전문 교과목의 50%) 이상인 '전공 외국어' 이수 단위를 확대하여 전공 외국어에 대한 심화 교육 강화
 - ※ 외국어 전공교과목의 대학과목선 이수제도(UP) 등의 도입 및 점진적 확대
-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 교육청 상설장학 강화

○ 외고는 학과별로 학생 선발

- 해당 외국어에 관심이 높고 진로 목적이 뚜렷한 학생에게 입학 하여 어학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언어(베트남어 등) 전공 학과를 개설하는 공립외고 등에 대해서는 학생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

□ 외국어 교육 성과 제고를 위한 적정규모 학교 운영(안)

- (목적) 내실있고 효과적인 외국어 교육을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학급당 학생수가 필수적 요건
 - ※ 학급당 학생수 ('09.10) : 사립외고(36.9명), 과학고(16.9명), 국제고(22.7명)
- (시행 방안) 외고의 학교규모를 학년별 '10학급 25명 수준' 으로 조정
 - 공립 외고는 '11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적용
 - 사립 외고는 향후 5년 이내에 학생수용계획 등 시·도 교육청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시행
- (지원 사항) 사립 외고의 학급 조정에 따른 과원 교사는 시·도 교육청에서 전원 수용하고, 환경 개선 등 지원 방안 마련

1.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

□ 영어, 수학 과목 '무학년제·학점제' 운영

- (목적)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에 맞게 다양한 수월성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뒤처지는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
- (내용) 학년 관계없이 고교 졸업 기준에 따라 학생이 수준별로 다양하게 교과를 선택하여 학점 취득
 - 영어, 수학을 10~15단계로 재구성하고 단계별로 도달해야 하는 세부 영역별 '국가 학업성취 수준' 설정
 - 우수 학생은 수월성 교육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을 지원하고, 뒤처지는 학생은 최소 수준에서 맞춤형 교육 실시
- (추진 계획) 교육과정 혁신학교,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는 우선 시행하고, 일반 고등학교는 시범 적용 후 확대 추진

□ '고등학교 졸업요건' 설정

- (목적) 뒤처지는 학생이 없도록 국가 수준에서 최소한의 학업성취 수준을 설정함으로써 전반적인 고등학교 교육의 질 제고
- (내용) 국민적 합의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조건으로 출석일수에 더하여 반드시 이수해야 할 최소 필수 과목과 성취수준 설정
 - 최소 필수 과목은 국어, 수학, 과학 등으로 설정하고, 학점제와 연계하여 수업시수와 성취수준 설정
 - 국가가 설정한 최소 수준에 대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고등학교 졸업 요건 관리
- (추진 계획) 무학년제·학점제 실시와 연계하여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에 우선 시행

□ '고등학교 대학과정(Highschool College)' 설치 · 운영

- (내용) 개별 고등학교 또는 거점학교에서 영어, 수학, 과학 과목 성적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최상 단계의 학습 기회 제공
 - 최상 단계의 영어수업은 영어전용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강좌 수강생 수가 일정수 이하일 경우 거점학교에서 실시
- (추진 계획) 방과후 학교 형태로 시범 운영하고 향후 무학년제 · 학점제와 연계하여 지역별 자율 운영

□ '대학과목 선이수제도(University-Level Program)' 확대

- (내용) 우수한 고등학생이 방학 중에 대학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입학 후에 학점으로 인정받는 수월성 교육 제도
- (대상 선정) 학교장이 선이수 과목, 학업성취 수준을 고려하여 추천서를 발급하고 대학별 자율 심사로 대상자 선정
- (추진 계획) 대학과목 선이수제도 교육과정의 질을 관리하면서 참여 대학과 지역의 확대 추진

□ '교과 교실제' 운영 확대

- (목적) 교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교실로 학생들이 이동하는 교과교실제를 운영하여 수준별 · 맞춤형 수업을 제공
 - ※ 현황('09) : 일반계고 333개교 · 전문계고 17개교, 예산 총 3,000억원(국고+지방비)
- (내용)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유형별 추진
 - 선진형 : 대부분 과목 적용, 3과목 수준별 이동수업 (+1학급)
 - 과목 중점형 : 수학 · 과학, 영어 특성화로 교과 중점학교 연계
 - 수준별 수업형 : 3과목 수준별 이동수업 (+1학급)
- (추진 계획) 선진형 60개교 추가 선정('10), '12년 이후 신설학교는 교과교실제 전면 적용

2. 교과 중점학교 운영 확대

□ 과학 중점학교 운영 확대

- (목적) 일반계 고교의 과학·수학 교육과정을 강화하여 인문사회 소양과 함께 심도있는 과학지식을 겸비한 우수 인재 육성
- (내용) 과학·수학 교과 특성에 적합한 교육시설을 갖추고 과학 중점과정을 운영하고자 희망하는 일반계고 지정('09, 53교)
 - 과학교실 4실, 수학교실 2실 이상 등 교육 시설 확보
 - ※ 10학년 과학·수학 시수 확대 및 연간 60시간 이상 과학체험 활동, 11·12학년 과학(8)·수학(4), 과학교양·융합·전문 4과목 이수
- (추진 계획) '12년까지 100교 지정하여 과학고·영재학교와 함께 연간 1만여 명의 충실한 교육을 받은 고교 수준 과학인재 양성

□ 영어 중점학교 지정 추진

- (내용) 영어과 교육과정의 자율적 운영 및 회화 중심의 수준별 이동수업 등을 통해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
 - 영어 수업시수 확대 및 회화 중심 수업을 실시하고, 영어회화, 영어작문 등 실용영어 선택과목 확대 개설
 - 학생의 수준과 희망을 반영한 수준별 이동수업(+1) 실시 및 무학년제 방과후 영어교실 운영
- (추진 계획) '10년 50개교 (교과교실제 연계), '12년까지 100개교로 확대

□ 예술·체육 중점학교 지정 추진

- (내용) 일반계 중·고등학교 가운데 예술·체육 교과를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예술·체육 중점학교 지정·운영
 - 예술·체육에 흥미와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시설 및 교원 확충 등 추진
- (추진 계획) '10년 30개교 내외 지정, 추후 확대

□ 고등학교 체제 개편

- (방향)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고교 유형과 체제를 단순화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 학교교육의 선택권 확대
- (내용) 고교 다양화 및 자율화의 방향에 맞춰, 고교 체제를 일반계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로 정비
 -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외고, 과학고, 예술·체육고, 국제고는 '특목고' 존치
 - 마이스터고는 '기술영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목고'로 포함
 - 운영상 특례규정에 의한 자율형공립고, 자율형사립고, 기숙형고교는 '자율고' 유형으로 설정
 - 전문계고, 전문계 특목고, 특성화고는 '특성화고'로 유형 단일화

< 고교 유형 정비 방안(안) >

현행		정비 후
일반계고	⇒	'일반계고'로 유지
전문계고, 전문계 특목고, 특성화고	⇒	'특성화고'로 일원화
특목고 9개 계열 (전문<농공수산해양>, 과학, 외국어, 예술, 체육, 국제 계열)	⇒	'특목고' 4개 계열 (과학고, 외고·국제고, 예술·체육고, 마이스터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고	⇒	새로운 유형인 '자율고' 신설

- (전문계고 체제 개편) 교육여건 변화 및 학생수 감소 추세에 따라 전문계고 체제 개편 추진 : 691개교('09) → 400개교('15)로 감축
- (추진 계획) 관련 법령 개정 후 고교체제 개편
 - 전문계고 감축 및 체제 개편은 단계적으로 추진

- ‘고등학교 입학제도 개선’ 및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는 ’10년 부터 즉시 시행하여 교육 개선 효과 제고

□ 고등학교 입학제도 개선

- 교육과학기술부 방안 확정 : ’10. 1.
- 시·도 교육청 협의 : ’10. 2.
- 시·도 교육청별 입학전형기본계획 확정 : ’10. 3.

□ 외국어고 제도 개선

- 사립 외고 학교별 계획 협의 : ’10. 1.
- 공립 외고 시·도 교육청 협의 : ’10. 1.
- 외고 적정 규모 정비 : 공립 ’11학년도부터, 사립 향후 5년 이내
- 외고 학교 유형 선택·전환 : ~’12.

□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

- 무학년제, 학점제, 고교 졸업요건 설정, 교과교실제 시행 : ’10. 3.
- 대학과목 선이수제도 확대 : ’10. 3
- 교과 중점학교 확대 운영 : ’10.~

□ 고등학교 체제 개편 방안(안)

- 고등학교 유형 관련 법령 개정 : ’10.
- 전문계고 감축 및 체제 개편 : ~’15.

참 고 자 료

1. 외교 등 특목고 정책 연혁
2. 현행 고등학교 입학제도 개요
3. 고등학교 운영 체제 정비 방안
4. 특수목적고등학교 현황
5. 외국어고 현황
6. 과학고 · 국제고 현황
7. 외국어고 특별전형 현황 (2010년도 입학전형)
8. 외국어고 학교별 학과 설치 현황
9. 고등학교 일반 현황
10. 학교유형별 근거 법령

참고 1 외고 등 특목고 정책 연혁

- 특목고 제도 도입 및 개교('74, 舊 교육법시행령 제112조)
 - ※ 인문계 3교(삼육/성심/중경), 국악고, 서울예술고, (서울)체육고, 철도고, 부산해양고
- 영재교육 강화 차원 외고 검토('82) ⇒ 경기과학고만 설립
⇒ 대원/대일외국어학교는 각종학교로 개교('84)
- 예술고, 체육고, 외국어('92), 국제고('98)를 특목고에 포함
⇒ 전국 10개 외고('92), 부산국제고('98)
- 특목고 지정·고시권, 시·도교육감에게 이양('01.3)
⇒ 외고 등 특목고 설립 확대 : 18개('01) → 30개('09)
- 사교육 경감대책 일환, 「특수목적고 운영 정상화 방안」 발표('04.10)
- 외고 설립 및 운영 개선 방안 발표 ('06.6.19)
 - 외고 등 학생모집 지역 제한, 지정·고시시 사전협의제 도입
- 사전협의제 도입위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공포 ('07.5.16)
- 수월성 제고를 위한 고등학교 운영 개선 및 체제 개편 방안 발표('07.10.29)
- '09 외고 등 특목고 입시방법 개선안 발표('07.12.26)
 - 내신실질반영 비율 30% 이상, 중 3-2학기 성적 반영, 지필고사 형태의 입학전형 요소 제외 등
- '10년 개교 창원과학고, 울산외고 특목고 지정을 위한 사전협의에서 사교육 유발요인을 최소화한 전형방식 협의('08.4, '08.9)
 - ※ 내신 중심 전형, 교과지식 평가를 지양하는 면접, 학교장추천서 유형화 등
- 외고 등 특목고 관련 지침 통합('08.10.30)
- '사교육경감 종합대책'('09.6.3)에 외고 대책 포함
 - 지필고사 금지, 중학교 수준 출제 등 입시 개선

참고 2 현행 고등학교 입학제도 개요

□ 관련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47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85조

【고교 입학제도 주요내용(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구 분	평준화 지역		비평준화 지역		
	전기학교 ¹⁾		후기학교		후기학교
입학전형 실시권자 (제77조)	교육감			학교장이 입학전형 방식을 결정한 후 교육감 승인	
지원방법 (제81조①)	1개교 선택		2개교 이상 선택		1개교 선택
모집지역 (제81조①,③)	광역	전국 ²⁾	광역	광역	전국 ²⁾
입학전형 (제82조~제84조)	내신, 선발고사, 실기, 적성검사, 실험, 면접 등 (자율형 사립고는 추첨)		추첨 또는 배정 ³⁾	내신, 선발고사, 실기, 적성검사, 실험, 면접 등 (자율형 사립고는 학교별 필기고사 금지)	

1) 전기학교 : 전문계고, 특목고, 특성화고, 예체능고, 자율(립)형 사립고
후기학교 : 전기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

2) 특목고(외고, 과고, 국제고 제외),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중 법인전입금 일정 기준(등록금의 25%, (예) 충남 북일고) 이상 부담하는 학교

3) 자율형 공립고의 경우 전기모집 이후 후기보다 앞서 학생모집 가능(교과부 지침)

□ 최근 개정('09. 3. 27) 사항

- (모집 지역) 특목고(외고, 과학고, 국제고)의 학생 모집지역을 전국에서 광역으로 변경
- (선발 방법) 고교 선발고사의 범위를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으로 제한
- (자율형 사립고) 평준화지역 자율형 사립고 추첨 제도 도입,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의무화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등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참고 3 고등학교 운영 체제 정비 방안

〈현행 고교 체제 ('09)〉

【일반분류】		【목적에 따른 분류】			【자율성부여】	
일반계고	전문계고	특 목 고	특성화고	영재학교	자 율 형 공 립 고	자 율 형 사 립 고
		전문계열 (농·공·수산·해양고)				
		과 학 고				
		외국어고				
		국 제 고				
		예 술 고				
		체 육 고				



〈 고교 체제 개편(안)〉

고 등 학 교				
일반계고	특성화고	특 목 고	자 율 고	영재학교
		과 학 고	자율형공립고	
		외고·국제고	자율형사립고	
		예술·체육고	기 속 형 고	
		마이스터고		

※ 전문계특목고, 특성화고, 전문계고는 '특성화고' 로 통합

참고 4 특수목적고등학교 현황

□ 총괄 현황

◆ 9개 계열 133교, 81,196명('09. 10. 기준)

(단위 : 개교, 명)

	공업	농업	수산	해양	과학	외국어	예술	체육	국제	계
학교 수	22	10	5	2	20	30	25	15	4	133
학생 수	24,623	2,724	2,489	1,089	3,500	25,734	16,319	3,484	1,234	81,196

□ 지역별·계열별 특수목적고등학교 현황

(단위 : 개교)

		공업	농업	수산	해양	과학	외국어	예술	체육	국제	계
서울	공	경기 기계공고				서울, 한성,중 세종		국악고 (국립) 전통예고 (국립)	서울체고	서울 국제고	19 국(2) 공(6) 사(11)
	사	수도 전기공고					대원, 이화, 대일, 한영	서울공연 예술고, 덕원, 서울, 선화			
부산	공	부산 기계공고 (국립)			부산 해사고 (국립)	장영실 과학고			부산체고	부산 국제고	10 국(2) 공(3) 사(5)
	사						부산, 부일, 부산국제	부산예고, 브니엘 예고			
대구	공	경북 기계공고				대구 과학고	대구외고		대구체고		6 공(4) 사(2)
	사	대중 금속공고						경북예고			
인천	공	인천 기계공고		인천해양 과학고	인천 해사고 (국립)	인천 과학고		인천예고	인천체고	인천 국제고	9 국(1) 공(6) 사(2)
	사	정석 항공공고					인천외고				
광주	공					광주 과학고		광주예고	광주체고		3 공(3)
	사										
대전	공	충남 기계공고, 대덕 전자기공				대전 과학고	대전외고		대전체고		6 공(5) 사(1)
	사							대전예고			
울산	공	울산정보 통신고				울산 과학고					3 공(2) 사(1)
	사							울산예고			

		공업	농업	수산	해양	과학	외국어	예술	체육	국제	계
경기	공		여주 자영농고			경기 과학고, 경기북 과학고	수원, 성남, 동두천	경기예고	경기체고		18 공(8) 사(10)
	사						한국외대 부속, 명지, 고양, 안양, 과천, 김포	계원, 안양, 고양		청심 국제고	
강원	공		춘천 농공고, 주천중고, 홍천농고			강원 과학고		강원예고	강원체고		6 공(6)
	사										
충북	공	청주 기계공고	보은 자영고			충북 과학고	청주외고	충북예고	충북체고		7 공(6) 사(1)
	사						중산외고				
충남	공	연무대 기계공고				충남 과학고	충남외고	충남예고	충남체고		5 공(5)
	사										
전북	공	전북 기계공고 (국립), 군산 기계공고, 전주 기계공고	김제 자영고			전북 과학고	전북외고		전북체고		8 국(1) 공(6) 사(1)
	사							전주예고			
전남	공		전남 생명 과학고	완도 수산고, 압해중고		전남 과학고	전남외고		전남체고		7 공(6) 사(1)
	사							전남예고			
경북	공	구미 전자공고 (국립), 금오공고	한국 생명 과학고	포항해양 과학고		경북 과학고, 경산 과학고	경북외고		경북체고		11 국(1) 공(7) 사(3)
	사	포항제철 공고						김천, 포항			
경남	공	창원 기계중고, 진주 기계공고, 김해 건설 공고, 경남 항공고	경남 자영고	경남해양 과학고		경남 과학고	김해외고		경남체고		11 공(9) 사(2)
	사						경남외고	경남예고			
제주	공		서귀포 산업 과학고			제주 과학고	제주외고				4 공(3) 사(1)
	사							남녕고			
계		22	10	5	2	20	30	25	15	4	133
		국(3)			국(2)			국(2)			국(7)
		공(15) 사(4)	공(10)	공(5)		공(20)	공(12) 사(18)	공(6) 사(17)	공(14) 사(1)	공(3) 사(1)	공(85) 사(41)

※ 서울과학고 → 영재고 변경('09,1학년) / 경기과학고·대구과학고 영재고 변경예정('10)
/ 완도수산고(해양·수산) → 수산계열로만 학과개편('07)

참고 5 외국어고 현황

(’09. 3. 기준, 단위: 명)

지역	학 교 명	설립 년도	설립 유형	학급 수	학생 수	교사 수	학급당 학생수	평준화/ 비평준화
서울	대일외국어고	1983	사립	36	1,306	53	36.3	평준화
	대원외국어고	1984	사립	36	1,305	57	36.5	평준화
	한영외국어고	1990	사립	30	1,095	49	36.7	평준화
	이화여자외국어고	1992	사립	18	651	33	36.2	평준화
	명덕외국어고	1992	사립	36	1,304	65	36.2	평준화
	서울외국어고	1994	사립	30	1,084	49	36.5	평준화
부산	부산외국어고	1985	사립	30	1,204	60	40.3	평준화
	부일외국어고	1994	사립	24	802	48	32.9	평준화
	부산국제외국어고	2003	사립	24	814	48	33.7	평준화
대구	대구외국어고	1997	공립	18	530	46	29.3	평준화
인천	인천외국어고	1985	사립	30	1,047	65	35.2	평준화
대전	대전외국어고	1995	공립	30	997	65	33.2	평준화
경기	과천외국어고(과천)	1990	사립	36	1,310	87	37.0	평준화
	안양외국어고(안양)	1996	사립	30	1,235	59	41.1	평준화
	고양외국어고(고양)	2002	사립	36	1,521	77	41.7	평준화
	경기외국어고(의왕)	2004	사립	24	1,041	55	42.8	평준화
	동두천외국어고(동두천)	2005	공립	24	738	57	30.2	비평준화
	한국외대부속용인외고(용인)	2005	사립	30	1,083	82	35.4	비평준화
	수원외국어고(수원)	2006	공립	24	761	52	30.7	평준화
	성남외국어고(성남)	2006	공립	24	743	53	30.0	평준화
	김포외국어고(김포)	2006	사립	23	834	38	36.0	비평준화
	충북	청주외국어고(청주)	1992	공립	24	540	51	22.8
충산외국어고(충주)		1992	사립	24	829	44	34.4	비평준화
충남	충남외국어고(아산)	2008	공립	12	356	31	29.4	비평준화
전북	전북외국어고(군산)	2005	공립	18	342	42	18.4	평준화
전남	전남외국어고(나주)	1994	공립	14	382	37	26.9	비평준화
경북	경북외국어고(구미)	1995	공립	15	448	40	29.8	비평준화
경남	경남외국어고(양산)	1987	사립	21	710	43	34.0	비평준화
	김해외국어고(김해 장유면)	2006	공립	15	457	39	30.5	비평준화
제주	제주외국어고(제주 애월읍)	2004	공립	12	292	27	24.0	비평준화
합 계				748	25,761	1,552	34.4 (평균)	

※ 공립-12개교, 사립-18개교

※ 평준화 지역 소재-20개교, 비평준화 지역 소재-10개교

참고 6 과학고 · 국제고 현황

(’09. 9. 기준, 단위: 명)

	지역	학 교 명	설립 년도	설립 유형	학급 수	학생 수	교사 수	학급당 학생수
1	서울	서울과학고	1989	공립	19	297	64	15.6
2		한성과학고	1992	공립	18	351	57	19.5
3		세종과학고	2008	공립	16	317	52	19.8
4	부산	장영실과학고	2002	공립	10	171	34	17.1
5	대구	대구과학고	1988	공립	11	218	35	19.8
6	인천	인천과학고	1994	공립	11	119	38	10.8
7	광주	광주과학고	1984	공립	10	181	33	18.1
8	대전	대전과학고	1984	공립	12	155	31	12.9
9	울산	울산과학고	2006	공립	9	132	29	14.7
10	경기	경기과학고	1983	공립	13	211	44	16.2
11		경기북과학고	2005	공립	13	223	42	17.2
12	강원	강원과학고	1993	공립	8	128	27	16.0
13	충북	충북과학고	1989	공립	5	102	19	20.4
14	충남	충남과학고	1993	공립	9	137	26	15.2
15	전북	전북과학고	1990	공립	6	101	23	16.8
16	전남	전남과학고	1992	공립	9	143	28	15.9
17	경북	경북과학고	1993	공립	6	92	20	15.3
18		경산과학고	2007	공립	6	138	33	23.0
19	경남	경남과학고	1984	공립	11	202	33	18.4
20	제주	제주과학고	1999	공립	5	82	17	16.4
합 계					207	3,500	685	16.9

	지역	학 교 명	설립 년도	설립 유형	학급 수	학생 수	교사 수	학급당 학생수
1	서울	서울국제고	2008	공립	12	286	41	23.8
2	부산	부산국제고	1998	공립	24	493	60	20.5
3	인천	인천국제고	2008	공립	11	271	33	24.6
4	경기	청심국제고	2006	사립	12	287	25	23.9
합 계					59	1,337	159	22.7

참고 7

외국어고 특별전형 현황 (2010년도 입학전형)

☐ 정원 내 전형

(* : '~명 이내'를 의미, 단위 : 명)

학교명	지역 · 설립유형	모집정원 (일반/특별)	모집 학급 (영어과)	특별전형				
				성적우수	어학우수	사회적 배려 대상자	리더십/ 학교장 추천	기타
대일 외고	서울 사립	420 (315/105)	12(0)	전교과: 40 심화교과: 40	-	5*	20*	
대원 외고	서울 사립	420 (312/108)	12(3)	-	영 어: 80 전공어: 20	5		체육특기 : 3
한영 외고	서울 사립	420 (287/133)	12(4)	50	영 어: 68 전공어: 10	5		-
이화여자 외고	서울 사립	210 (160/50)	6(2)	-	전공어: 35*	5*	10*	
명덕 외고	서울 사립	420 (307/113)	12(4)	96	12	5		-
서울 외고	서울 사립	350 (235/115)	10(4)	전교과: 50 심화교과: 50	전공어: 10	5*		-
부산 외고	부산 사립	400 (262/138)	10(0)	80	50	4	4	
부일 외고	부산 사립	280 (157/123)	8(영중· 영일)	40	40	3	40	
부산국제 외고	부산 사립	288 (144/144)	8(영독· 영중· 영일)	20	60	4	40	입학사정관: 20
대구 외고	대구 공립	180 (130/50)	6(4)	-	영 어: 4* 전공어: 2*	-	13*	해외수학자: 6* 영재학급수료: 20* 경시대회 : 5*
인천 외고	인천 사립	350 (200/150)	10(영중· 영일· 영스)	120	영 어: 9 전공어: 6	3	12	
미추홀 외고	인천 공립	192 (137/55)	8(3)	-	17	38		-
대전 외고	대전 공립	330 (226/104)	10(2)	-	영 어: 80 전공어: 24	-		-
울산 외고	울산 공립	150 (90/60)	6(3)	-	30	30		-
과천 외고	경기 사립	420 (279/141)	12(4)	96	24	-		지역우수자 : 21
안양 외고	경기 사립	400	10(4)	글로벌리더 전형				80
				단계별 전형	성적 우수자 단계			90
					재능 우수자 단계			50
					적성검사 단계			80
					내신·적성검사 단계			100
고양 외고	경기 사립	480 (387/93)	12(4)	20	33	-		영어듣기·구술 면접 : 30 글로벌인재 : 10

학교명	지역 설립유형	모집정원 (일반/특별)	모집 학급 (영어과)	특 별 전 형																	
				성적우수	어학우수	사회적 배려 대상자	리더십/ 학교장 추천	기 타													
경기 외고	경기 사립	320	8(4)	<table border="1"> <tr> <td rowspan="3">입학사정관제</td> <td>경기도지역균형선발</td> <td>80</td> </tr> <tr> <td>미래인재</td> <td>112</td> </tr> <tr> <td>글로벌인재</td> <td>16</td> </tr> <tr> <td colspan="2">일반성적우수자</td> <td>96</td> </tr> <tr> <td colspan="2">외국어 우수자</td> <td>16</td> </tr> </table>					입학사정관제	경기도지역균형선발	80	미래인재	112	글로벌인재	16	일반성적우수자		96	외국어 우수자		16
입학사정관제	경기도지역균형선발	80																			
	미래인재	112																			
	글로벌인재	16																			
일반성적우수자		96																			
외국어 우수자		16																			
동두천 외고	경기 공립	240 (112/128)	8(4)	96	8	-	8	글로벌인재 : 16													
외대부속 외고 (용인)	경기 사립	350 (100/250)	10(3)	-	영 어: 45 전공어: 10	-	90	지역우수자: 105													
수원 외고	경기 공립	240 (120/120)	8(3)	80	20	-	-	미래인재 : 20													
성남 외고	경기 공립	240 (212/28)	8(2)	-	24	4	-	-													
김포 외고	경기 사립	210 (168/42)	6(2)	30	12	-	-	-													
청주 외고	충북 공립	200 (183/17)	8(2)	해당 전공 정원의 10% 이내에서 외국어경시대회 입상, 외국어 자격증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전형방법은 일반전형과 동일																	
증산 외고	충북 사립	256 (236/20)	8(4)	16	4	-	-	-													
충남 외고	충남 공립	180 (174/6)	6(3)	-	6	-	-	-													
전북 외고	전북 공립	120 (120/0)	6(영중· 영일· 영스)	-	-	-	-	-													
전남 외고	전남 공립	125 (105/20)	5(2)	10	10	-	-	-													
경북 외고	경북 공립	150 (135/15)	5(3)	-	영 어: 9 전공어: 6	-	-	-													
경남 외고	경남 사립	245 (150/95)	7(3)	50	영 어: 14 전공어: 6	-	20	입학사정관: 5													
김해 외고	경남 공립	150 (95/55)	5(3)	-	15	-	-	농촌지역 우수자: 10 지역우수자: 30													
강원 외고	강원 사립	150 (117/33)	5(2)	10	10	10	-	사회적배려대상자 학교장추천: 3													
제주 외고	제주 공립	100 (100/0)	4(1)	-	-	-	-	-													
합 계		8,986 (-/2,489)	271(88)	880	790	126	257	304													

□ 정원 외 전형

- 교육보호대상자(모집정원의 2%이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 특례입학대상자(모집정원의 3%이내)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 별도 규정에 의한 지역우수자 정원 외 선발 가능(동두천외고 등)

참고 8

외국어고 학과 설치 및 모집인원 현황

(2010학년도 모집인원 기준, 단위: 명)

지역	학 교 명	학급 수			선발 인원	학과	전공 어	서양어			동양어		국제어	
		1년	2년	3년				영	독	프	일	중	스	러
서울	대일외고	12	12	12	420	3	6	-	70	70	70	70	70	70
	대원외고	12	12	12	420	3	6	105	35	70	35	105	70	-
	한영외고	10	10	8	420	3	6	140	35	35	35	105	70	-
	이화여자외고	6	6	6	210	4	4	70	35	70	-	35	-	-
	명덕외고	12	12	12	420	6	6	140	70	70	35	70	-	35
	서울외고	10	10	10	350	5	5	140	70	35	35	70	-	-
부산	부산외고	10	10	10	400	4	4	-	80	80	120	120	-	-
	부일외고	8	8	8	280	1	1	-	-	-	140	140	-	-
	부산국제외고	8	8	8	288	3	3	-	72	-	108	108	-	-
대구	대구외고	6	6	6	180	3	3	120	-	-	30	30	-	-
인천	인천외고	10	10	8	350	3	3	-	-	-	105	140	105	-
대전	대전외고	10	10	10	330	7	7	66	33	66	33	66	33	33
경기	과천외고	12	12	12	420	5	5	140	35	35	105	105	-	-
	안양외고	10	10	10	400	3	3	160	-	-	120	120	-	-
	고양외고	12	12	12	480	4	4	160	-	-	80	160	80	-
	경기외고	8	8	8	320	3	3	160	-	-	80	80	-	-
	동두천외고	8	8	8	240	3	3	120	-	-	60	60	-	-
	한국외대부속외고	10	10	10	350	5	5	105	35	35	70	105	-	-
	수원외고	8	8	8	240	4	4	90	-	30	30	60	-	30
	성남외고	8	8	8	240	5	5	60	60	-	60	60	-	-
	김포외고	9	8	8	210	3	3	70	-	-	70	70	-	-
충북	청주외고	8	8	8	200	7	7	50	25	25	25	25	25	25
	증산외고	8	8	8	256	3	3	128	-	-	64	64	-	-
충남	충남외고	6	0	0	180	3	3	90	-	-	30	60	-	-
전북	전북외고	6	6	6	120	3	3	-	-	-	40	40	40	-
전남	전남외고	5	4	4	125	4	4	50	25	25	-	25	-	-
경북	경북외고	5	5	5	150	3	3	90	-	-	30	30	-	-
경남	김해외고	5	5	5	150	3	3	90	-	-	30	30	-	-
제주	제주외고	4	4	4	100	4	4	25	-	-	25	25	25	-
합 계		246	238	234	8,249	평균 3.79	평균 4.10	2,369	680	646	1,665	2,178	518	193
학과별 선발인원 비율(%)								28.7	8.2	7.8	20.2	26.4	6.3	2.3

※ 영: 영어, 독: 독일어, 프: 프랑스어, 일: 일어, 중: 중국어, 스: 스페인어, 러: 러시아어

참고 9 고등학교 일반 현황

□ 일반계고 현황

(단위 : 개교, 명)

	학 교 수				학 생 수				학 급 당 학 생 수			
	합계	국	공	사	합 계	국	공	사	합계	국	공	사
서울	225	3	81	141	2,128	102,123	193,412	297,663	35.7	36.1	34.9	36.2
부산	97	1	49	47	1,119	47,386	50,724	99,229	35.6	36.1	35.5	35.7
대구	69	1	30	38	1,151	33,994	48,254	83,399	36.0	37.1	35.8	36.1
인천	80	-	58	22	-	60,166	25,036	85,202	35.2	-	34.9	36.1
광주	49	1	13	35	911	11,028	36,775	48,714	36.6	35.0	35.0	37.2
대전	48	-	26	22	-	28,566	22,323	50,889	35.3	-	35.8	34.7
울산	36	-	25	11	-	27,835	11,796	39,631	38.3	-	38.7	37.4
경기	256	-	177	79	-	227,841	93,049	320,890	37.3	-	37.2	37.7
강원	67	1	52	14	973	20,604	9,061	30,638	31.7	34.8	31.1	32.8
충북	52	2	35	15	1,102	25,695	12,695	39,492	34.5	34.4	34.1	35.2
충남	81	1	52	28	571	35,617	17,202	53,390	32.0	30.1	32.1	31.7
전북	75	1	28	46	824	13,819	32,639	47,282	31.5	33.0	30.1	32.0
전남	90	-	55	35	-	25,086	21,609	46,695	31.0	-	30.7	31.4
경북	123	-	59	64	-	27,229	40,008	67,237	31.8	-	31.3	32.2
경남	127	1	75	51	654	60,972	33,021	94,647	33.6	36.3	34.0	32.8
제주	18	1	10	7	928	6,633	6,927	14,488	35.7	37.1	33.8	37.4
합 계	1,493	13	825	655	10,361	754,594	654,531	1,419,486	35.1	35.2	35.0	35.3

□ 전문계고 현황

(단위 : 개교, 명)

	학 교 수				학 생 수				학 급 당 학 생 수			
	합계	국	공	사	합계	국	공	사	합계	국	공	사
서울	77	-	19	58	64,279	-	18,774	45,505	-	28.3	29.7	29.3
부산	43	2	11	30	39,905	2,157	9,842	27,906	30.0	28.7	29.3	29.2
대구	20	-	9	11	24,228	-	10,350	13,878	-	32.8	33.5	33.2
인천	29	1	19	9	26,278	534	17,748	7,996	29.7	30.9	32.4	31.3
광주	13	-	6	7	15,645	-	6,925	8,720	-	33.0	35.3	34.2
대전	12	-	6	6	12,149	-	6,149	6,000	-	29.3	31.7	30.4
울산	12	-	10	2	11,094	-	9,110	1,984	-	31.5	32.5	31.7
경기	124	-	68	56	115,745	-	62,511	53,234	-	33.3	35.8	34.4
강원	47	-	41	6	24,858	-	20,494	4,364	-	27.3	31.6	27.9
충북	30	-	24	6	18,906	-	14,274	4,632	-	29.2	31.9	29.8
충남	35	-	27	8	18,763	-	12,142	6,621	-	25.3	31.1	27.1
전북	55	1	34	20	24,936	1,494	14,138	9,304	29.3	25.1	25.8	25.6
전남	63	-	51	12	23,569	-	14,241	9,328	-	21.5	29.2	24.0
경북	71	1	43	27	29,570	1,225	14,871	13,474	29.2	26.8	29.0	27.9
경남	54	-	28	26	29,751	-	12,702	17,049	-	27.3	29.7	28.6
제주	12	-	10	2	7,816	-	5,840	1,976	-	28.6	35.3	30.1
합 계	697	5	406	286	487,492	5,410	250,111	231,971	29.6	28.9	31.3	30.0

참고 10 학교유형별 근거 법령

① 일반계고

•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04.1.29>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고등학교의 전학 등) 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일반계고등학교, 전문계고등학교, 예·체능계고등학교,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고등학교,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 및 학력인정각종학교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4.12>

② 전문계고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 (선발시기의 구분) ①고등학교 신입생의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행하되,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이하 "전기학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하며, 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이하 "후기학교"라 한다)는 전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모든 고등학교로 한다.

<개정 2007.4.12, 2009.3.27>

1. 전문계고등학교(농업·공업·상업·임업, 정보·통신, 수산·해운, 가사·실업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③ 특수목적고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특수목적고등학교)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1.3.2, 2007.5.16>

1. 기계·전기·전자·건설 등 공업계열의 고등학교
2.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의 고등학교
3. 수산자영자 양성을 위한 수산계열의 고등학교
4. 선원 양성을 위한 해양계열의 고등학교
5. 과학영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6. 어학영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7.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
8.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9.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전문인의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④ 특성화고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특성화고등학교) ①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1.10.20>

⑤ 마이스터고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2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전문적인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 고등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공립·사립 고등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교육감이 각각 지정·고시한다.

⑥ 자율형 사립고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105조의 3 (자율학교의 지정 등 <개정 2009.3.27>)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 실시하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직원인건비 및 학교·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할 것
2.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전입금기준 및 교육과정운영기준을 충족할 것

⑦ 영재학교

•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 (영재학교의 지정·설립과 운영 <개정 2005.12.7>) ①국가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학교중 일부학교를 지정하여 영재학교로 운영하거나 새로이 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⑧ 자율학교(운영상의 개념)

• 초·중등교육법 제61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제1항·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제29조제1항·제31조·제39조·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 (자율학교의 지정 등 <개정 2009.3.27>) ①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는 국·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감이 지정한다. <개정 2001.1.29, 2004.2.17>

②자율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4.2.17>

③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4.2.17, 2008.2.29, 2009.3.27>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개별학생의 적성·능력을 고려한 열린교육 또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3. 학생의 창의력 계발 또는 인성함양 등을 목적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4. 특성화중학교
5. 특성화고등학교
6. 그 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다만,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후기고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자립형 사립고, 개방형 자율학교는 자율학교의 특수한 종류로 정책적으로 도입

⑨ 특성화중학교(국제중학교 등)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 (특성화중학교) ①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1.10.20, 2007.5.16, 2008.2.29>